

의안번호	2218495
의 회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6. 6. 30.
추계번호	26A2313
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제1항제2호 (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)	○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(제1항) - 2.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·이전 등으로 <u>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</u> *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사유 변경 - (현행)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- (개정안)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3조제1항제2호 (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시·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‘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

가 있는 경우'로 변경하려는 것임

-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함¹⁾
 - 시·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·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²⁾
 -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6. 4. 30. 기준 26개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지정되어 있음
- ※ [참고자료]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

- 개정안의 시행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이 증가하여 추가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³⁾

-
- 1)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5. “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”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.
- 2)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(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1.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
 - 2.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·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
 -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
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- 3)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(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)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,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

-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자에게 제한경쟁입찰⁴⁾, 수의계약⁵⁾,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우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, 「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」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운영에 2026년 4억 7,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

[표 1]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예산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 (회계, 코드)	내용	2026년 제1회추경예산
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(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, 3336-347)	(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운영) 경영위기 중소기업 밀 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여 신 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· 사전컨설팅 및 현황분석(197백만원) ·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·해제(165백만원) · 사후관리 및 제도개선방안(116백만원)	478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,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

- 한편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4조⁶⁾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로

전전략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, 자금, 인력, 판로, 시설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(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)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자금의 보조, 융자, 보증,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
 2.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
 3.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·기술·회계 관련 자문 지원
 4.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,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
 5.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경영·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
- 4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
 - 5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
 - 6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4조(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감면대상사업”이라 한다)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.
 1. 2028년 12월 31일까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
 2. 2028년 12월 31일까지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

②~⑦ (생략)

지정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과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개정안에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사유의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,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정 신청 수요 증가 여부 및 규모, 향후 추가 지정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손희정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손희정	02-6788-3750	hjson87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('26. 4. 30. 기준)

연번	지정 지역	소재지(시군구)	지정(연장)기간	신청사유*	비고
1	동화농공단지	전라남도 장성군	'24.7.22. ~'26.7.21.	제2호	
2	삼계농공단지	전라남도 장성군	'24.7.22. ~'26.7.21.	제2호	
3	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	전라남도 장성군	'24.7.22. ~'26.7.21.	제2호	
4	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	전라남도 장성군	'24.7.22. ~'26.7.21.	제4호 (제2호에 준하는 경우)	
5	금사공업지역	부산광역시 금정구	'25.1.26. ~'27.1.25.	제4호 (제1호에 준하는 경우)	1회 연장
6	포항철강1단지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	'25.1.26. ~'27.1.25.	제3호	1회 연장
7	포항철강2단지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	'25.1.26. ~'27.1.25.	제3호	1회 연장
8	포항철강3단지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	'25.1.26. ~'27.1.25.	제3호	1회 연장
9	포항4일반산업단지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	'25.1.26. ~'27.1.25.	제3호	1회 연장
10	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	'25.1.26. ~'27.1.25.	제3호	1회 연장
11	북평국가산업단지	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	'25.2.27. ~'27.2.26.	확인 불가** (‘95년 국토부 지정)	1회 연장
12	북평일반산업단지	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	'25.2.27. ~'27.2.26.	확인 불가 (‘95년 국토부 지정)	1회 연장
13	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	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	'25.2.27. ~'27.2.26.	확인 불가 (‘10년 국토부 지정)	1회 연장
14	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	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	'25.2.27. ~'27.2.26.	확인 불가 (‘10년 국토부 지정)	1회 연장
15	나주일반산업단지	전라남도 나주시	'25.2.27. ~'27.2.26.	확인 불가 (‘10년 국토부 지정)	1회 연장
16	나주혁신산업단지	전라남도 나주시	'25.2.27. ~'27.2.26.	확인 불가 (‘10년 국토부 지정)	1회 연장

연번	지정 지역	소재지(시군구)	지정(연장)기간	신청사유*	비고
17	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	전라남도 장흥군	'25.2.27. ~'27.2.26.	확인 불가 (‘10년 국토부 지정)	1회 연장
18	강진산업단지	전라남도 강진군	'25.2.27. ~'27.2.26.	확인 불가 (‘15년 국토부 지정)	1회 연장
19	동함평일반산업단지	전라남도 함평군	'25.2.27. ~'27.2.26.	확인 불가 (‘15년 국토부 지정)	1회 연장
20	세풍일반산업단지(1단계)	전라남도 광양시	'25.2.27. ~'27.2.26.	확인 불가 (‘15년 국토부 지정)	1회 연장
21	남후농공단지	경상북도 안동시	'25.7.8. ~'27.7.7.	제3호	
22	영덕 제2농공단지 (영덕 재생에너지혁신단지)	경상북도 영덕군	'25.7.8. ~'27.7.7.	제3호	
23	하남일반산단	광주광역시 광산구	'25.11.21. ~'27.11.20.	제4호 (제2호에 준하는 경우)	1회 연장
24	진곡일반산단	광주광역시 광산구	'25.11.21. ~'27.11.20.	제4호 (제2호에 준하는 경우)	1회 연장
25	평동1,2차일반산단	광주광역시 광산구	'25.11.21. ~'27.11.20.	제4호 (제2호에 준하는 경우)	1회 연장
26	평동3차일반산단	광주광역시 광산구	'25.11.21. ~'27.11.20.	제4호 (제2호에 준하는 경우)	1회 연장

주: *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각 호

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(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
2.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·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** 11번~20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제도 이관('16. 9. 30.) 이전, 국토교통부에서 시·도의 신청서를 접수·지정한 건으로 당시 신청사유 확인 불가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